#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7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황명선·조 국·김우영

황정아 · 최민희 · 박해철

주철현 • 박용갑 • 이재관

이해식 • 이광희 • 문금주

박희승 · 오세희 · 정진욱

박지원 • 민형배 의원

(17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만원" 을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	세액공제 등) ①
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	
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	
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u>30만원</u>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u>10만</u>	<u>30만</u>
<u>원</u>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u>원</u>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	
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u>10만원</u> 이하의 금액을 기부	1. <u>30만원</u>
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	
10분의 100	
2. <u>10만원</u> 초과 5백만원 이하의	2. <u>30만원</u>
금액을 기부한 경우: <u>10만원</u> ×	<u>30만원</u>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	
부금 - <u>10만원</u> ) × 100분의 15	<u>30만원</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